『2021년 G-스타트업 예비창업 지원사업』
청년창업자 모집 공고(안)

1.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1년 5월 ~ 2022년 2월

○ 지원대상 : 혁신적인 기술기반*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만 18세~39세 강원도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(예비)청년창업자

* 기술기반 업종 : 제조업, 지식서비스 분야(ICT · AI · 빅데이터 등)

* 강원형 뉴딜사업(이모빌리티, 감염병 예방관련 바이오,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(액화수소 등), 온라인 상점, 의료 빅데이터) 및 강원도 역점시책(특수 목적용 드론, 스마트 수산, 탄소중립 관련 사업) 우대

○ 모집규모 : 30팀(춘천, 원주, 강릉권 권역별 10개 내외)

○ 지원내용 : 창업사업화 지원(최대 50백만 원), 창업교육 및 특화프로그램

2. 참여대상자 자격요건

○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**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**로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 기간 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 강원도 내에서 창업을 1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자

* 대학(원) 재학생 참여 불가(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 참여 가능)

○ 공고일 기준 도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**창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** (기 창업자)

○ 총사업비 중 자부담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(사본)*을 제출하는 사람

- 총사업비 중 20% 자부담(현물 10%이하, 현금 10%이상)

* 이행보증보험은 사업기간과 관리기간을 포함하여 가입

3. 지원제외

○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지원제외)

○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창업사업화 지원을 받은 동일과제*로 신청하는 자

* 동일한 창업과제 : 핵심기술·소재·제품이 동일한 창업과제(기존 제품의 개선, 기존 제품의 기술 적용, 기존 핵심소재에 다른 소재의 결합 등)

○ **중앙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**

○ 정부, 지자체,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**중도포기 경험이 있는 자**

○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(채무상환 중인 사람 포함)

○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
○ 신청자 명의로 폐업 사실이 있는 사람 또는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
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도용하여 제출한 자

《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》

1. 일반유흥주점업
2. 무도유흥주점업
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4. 지원내용

○ 사업화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지원(25백만 원 ~ 50백만 원), 창업교육(40시간)

구 분	예산 범위	집행 주요내용(예산항목)
합 계	100%	-
참여인력 인건비	총사업비 40% 이내	- 사업기간 종료일 3개월 이전까지 신규채용하는 인력 인건비 예산 범위 내 집행 가능
사업화 사업비	총사업비 40% 이상 가능	- 시제품 제작 외주용역비, - 재료비, 광고비(마케팅) - 기계장치 구입(총사업비 10%이내) - 기자재임차료 - 지재권·무형자산취득비
창업공간 임차료 (지급수수료)	총사업비 5% 이내	- 사무실, 작업공간 등(지급수수료)
기술정보활동비 (지급수수료)	총사업비 10% 이내	- 기술이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, 운반비 등 - 회계감사비(의무계상)
창업활동비	총사업비 5% 이내	- 일반수용비(소모품비), 여비(교통비) 등

* 총사업비 지원조건 : 도비 80%, 자부담 20%(현물 10%이하, 현금 10%이상)

5. 접수 및 선정

○ 접수기간 : 2021. 3. 19.(금) ~ 4. 7.(수) 18:00까지(우편은 도착시점)

○ 제출서류 : 첨부파일의 **참여신청서 제출**

※ 각종 증빙서류 붙임서류 목록 확인

○ 선정방법 : 서류 및 발표평가

– 1차 서면심사(주관기관) → 2차 발표심사(운영기관)

○ 가점부여 : 아래 항목별 0.5점을 부여하며 최대 2점까지 부여

–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(단, 권리권자에 한함)

– 여성 · 장애인 · 벤처기업(기 창업자일 경우)

–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

–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·주관 대회에 한함)

–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G-아카데미 창업교육 이수자

○ 특례사항 : 창업경진대회(도가 보조하는 대회 한정) 1등 과제 우선 선발

※ 입상 후 3년 이내(공고일 기준)만 신청 가능, 자격요건 및 제외대상자의 경우 적용 불가, 재학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 한정

○ 우대사항 : 강원형 뉴딜사업, 강원도 역점시책 관련 업종

※ 강원형 뉴딜사업관련(이모빌리티, 감염병 예방관련 바이오, 기후변화 대응 신산업(액화수소 등), 온라인 상점, 의료 빅데이터) 및 강원도 역점시책(특수 목적용 드론, 스마트 수산, 탄소중립) 우대

6. 사업 추진절차

창업기업 모집공고 (주관기관) **3~4월**	**(예비)청년창업자** **신청 · 접수** **3~4월**	**요건검토 및 평가** (주관기관, 운영기관) **4월**
청년창업자 선정 공지 (강원도, 운영기관 홈페이지) **5월**	**최종 계획서 제출** **5월**	**협약체결** (주관기관↔청년창업자) **5월**
창업교육 · 워크숍(28시간) **사업수행 점검(중간, 최종)** **'21.5월 ~ '22.2월**	**사업수행** **(청년창업자)** **'21.5월 ~ '22.2월**	**사전교육** (운영기관/12시간) **6월**

7. 유의사항

○ 청년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(예비)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①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"지방재정법"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② 부정사용금액은 전액 반환 조치합니다.
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창업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○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강원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
– 팀원으로 참가하여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수혜 받았던 사업계획서로 신청하는 것도 도용의 범주에 포함

○ 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 한 경우, 선정 취소,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○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 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○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등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
– 실패범위 :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시제품 미완성, 또는 사업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 미이행

○ 사업종료 후 1년의 관리기간 동안 휴폐업,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 기 집행분 전액 환수

○ 사업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운영기관 및 주관기관의 사업화 현황, 경영성과 등 조사에 성실히 응답하고 관련 자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.

8. 문의 / 접수

○ 접수방법 : 신청서류 작성 후 **방문 또는 우편 접수**

※ 필수사항 : 신청서류 파일 e-mail (sandan@korea.kr) 전송

○ 접 수 처 :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(033-660-8099)
(25425)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, 강원도립대 산학협력단